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허5614 거절결정(특)

원 고 A

스위스

대표자 B , C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주현, 김은진, 손철, 박성인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8. 31. 2022원53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호증의 1 내지 6)

- 1) 발명의 명칭: 어린이 캐리어
-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2019. 4. 19./ 2018. 4. 19./ 제10-2019-0046050호
 - 3) 청구범위(2021. 8. 17.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1】어린이 캐리어에 있어서, 상기 어린이 캐리어는:

허리 스트랩과 2개의 숄더 스트랩을 포함하는 수용 하네스; 및

상기 수용 하네스와 연결된 어린이 지지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어린이 지지 부분은 파스너에 의해 서로 착탈식으로 연결된 목 지지 부분과 몸통 지지 부분을 포함 하되, 상기 파스너는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과 연결하기 위해 결합되고 목 지 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분리되며,

2개의 숄더 스트랩들은, 각각, 허리 스트랩과 인접하게 고정 연결된 개별 고정 단부 및 몸통 지지 부분 또는 허리 스트랩에 착탈식으로 체결되도록 작동될 수 있는 원위 단부를 가지고,

2개의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들은 각각 2개의 이격 위치에서 허리 스트랩과 고정 연결되며, 2개의 숄더 스트랩들은 허리 스트랩으로부터 원위 단부들로 서로로부 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연장되고, 몸통 지지 부분은 원위 단부와 고정 단부 사이의 중간 위치에서 2개의 숄더 스트랩 각각에 착탈식으로 체결되도록 작동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이하'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파스너는 지퍼 파스너, 스냅 파스너, 버튼 파스너 또는 후크 및 루프 파스너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목 지지 부분은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에 대해 복수의 수직 위치들 사이에서 조절하기 위해 몸통 지지 부분 위로 접혀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목 지지 부분은 각각 2개의 제1체결 부분들이 제공되며 서로 횡단 방향으로 맞은편에 배열된 2개의 단부 부분들을 가지고, 몸통 지지 부분의 각각의 좌측 및 우측면은 제1체결 부분들과 결합되고 제1체결 부분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복수의 제2체결 부분들을 가지며, 목 지지 부분의 2개의 제1체결 부분들은,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에 대해 제1수직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해, 몸통 지지 부분의 좌측 및 우측면 상에서 제2체결 부분들 중 2개의 상측 체결 부분들과 결합되고,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에 대해 제2수직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해, 몸통지지 부분의 좌측 및 우측면 상에서 제2체결 부분들 중 2개의 하측 체결 부분들과 결합되고,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에 대해 제2수직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해, 몸통지지 부분의 좌측 및 우측면 상에서 제2체결 부분들 중 2개의 하측 체결 부분들과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제1체결 부분들은 개구들이며 제2체결 부분들은 버튼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목 지지 부분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덮기 위해 어린 이 지지부분에 장착될 수 있는 턱받이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7】제6항에 있어서, 목 지지 부분은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에 대해 복수의 수직 위치들 사이에서 조절하기 위해 몸통 지지 부분 위로 접혀질 수 있으며, 턱받이는 목 지지 부분과 함께 몸통 지지 부분에 대해 임의의 수직 위치에 장착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8】제6항에 있어서, 턱받이는 횡단 부분 및 서로 맞은편에 있는 두 측면들에서 상기 횡단 부분으로부터 돌출된 두 측면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9】제6항에 있어서, 턱받이는 몸통 지지 부분 및/ 또는 목 지지 부분에 착탈식으로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10】제6항에 있어서, 몸통 지지 부분은 턱받이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기위해 턱받이와 결합될 수 있는 복수의 체결 부분들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11】제10항에 있어서, 체결 부분들은 버튼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12】제10항에 있어서, 목 지지 부분은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에 대해 원하는 수직 위치에 조절하기 위해 몸통 지지 부분 위로 접혀질 수 있으며, 몸통 지지 부분 상에서 체결 부분들은, 목 지지 부분을 원하는 수직 위치에 고정하고 탁반이를 목 지지 부분에 인접하게 배열하기 위해, 목 지지 부분과 탁반이와 결합될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13】제6항에 있어서, 2개의 숄더 스트랩은 각각 2개의 제1커넥터를 가

지며, 어린이 지지 부분은, 각각 몸통 지지 부분에 결부되고 2개의 제1커넥터와 결합되도록 작동될 수 있는 2개의 제2커넥터가 제공된 2개의 벨트 부분을 추가로 포함하며, 탁받이는 목 지지 부분에 장착될 때 2개의 벨트 부분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14】어린이 캐리어에 있어서, 상기 어린이 캐리어는:

수용 하네스;

상기 수용 하네스와 연결된 어린이 지지 부분을 포함하되, 상기 어린이 지지 부분은 서로 연결된 목 지지 부분과 몸통 지지 부분을 포함하며,

목 지지 부분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덮기 위해 어린이 지지 부분에 장착될 수 있는 턱받이를 포함하되;

상기 목 지지 부분은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에 대해 원하는 수직 위치에 조절하기 위해 몸통 지지 부분 위로 접혀질 수 있고, 몸통 지지 부분은 복수의 체결 부분들을 포함하며, 각각의 체결 부분들은, 목 지지 부분을 원하는 수직 위치에 고정하고 턱받이를 목 지지 부분에 인접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각각, 목 지지 부분 및 턱받이와 동시에 결합되도록 작동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15】제14항에 있어서, 턱받이는 횡단 부분 및 서로 맞은편에 있는 두 측면들에서 상기 횡단 부분으로부터 돌출된 두 측면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16】제14항에 있어서, 체결 부분들은 버튼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17】제14항에 있어서, 수용 하네스는 2개의 제1커넥터를 가진 2개의 숄

더 스트랩을 포함하며, 어린이 지지 부분은, 각각 몸통 지지 부분에 결부되고 2개의 제 1커넥터와 결합될 수 있는 2개의 제2커넥터가 제공된 2개의 벨트 부분을 추가로 포함하며, 목 지지 부분에 장착될 때 턱받이는 2개의 벨트 부분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18】제14항에 있어서, 몸통 지지 부분과 목 지지 부분은 파스너에 의해서로 착탈식으로 연결되며, 상기 파스너는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과 연결하기위해 결합되고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청구항 19】제18항에 있어서, 파스너는 지퍼 파스너, 스냅 파스너, 버튼 파스너 또는 후크 및 루프 파스너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4) 주요 내용 및 도면

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3> 어린이 캐리어 제품들은, 보육자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보육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어린이를 안고 움직일 수 있게 해 준다.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타입의어린이 캐리어는 어린이를 수용하는 방법에서 다양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어린이는 누운 위치 또는 전방 혹은 후방을 향하는 위치로 보육자 앞에 수용될 수 있거나, 혹은 보육자의 등에 수용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캐리어는 기능도 다양할 수 있는데, 예컨대, 단일 용도, 2중 용도 등을 가질 수 있다.

<0004> 어린이 캐리어의 디자인은 보육자에게 압박(stress)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어린이의 힙, 허리, 목과 머리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구부러 지거나 어린이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압력이 제공되지 않고도, 적절하게 지지될 수 있는 편안 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현재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어린이 캐리어는 이러 한 요구를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어린이 캐리어는 어린이를 앉히기 위한 공간 형상의 부피가 고정되어, 이에 따라 상이한 크기의 어린이들을 다른 위치에 앉힐 수 있는 요구에 적절할 수 없다. <0005> 따라서, 사용 시에 편리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중 적어도 몇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된 어린이 캐리어가 필요하다.

말명의 내용

<0006> 본 특허출원은 사용 시에 편리하고 융통성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를 기술한다.

<0007> 한 실시예에 따르면, 어린이 캐리어는, 수용 하네스 및 상기 수용 하네스와 연결된 어린이 지지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어린이 지지 부분은 파스너에 의해 서로 착탈식으로 연 결된 목 지지 부분과 몸통 지지 부분을 포함하되, 상기 파스너는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과 연결하기 위해 결합되고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분 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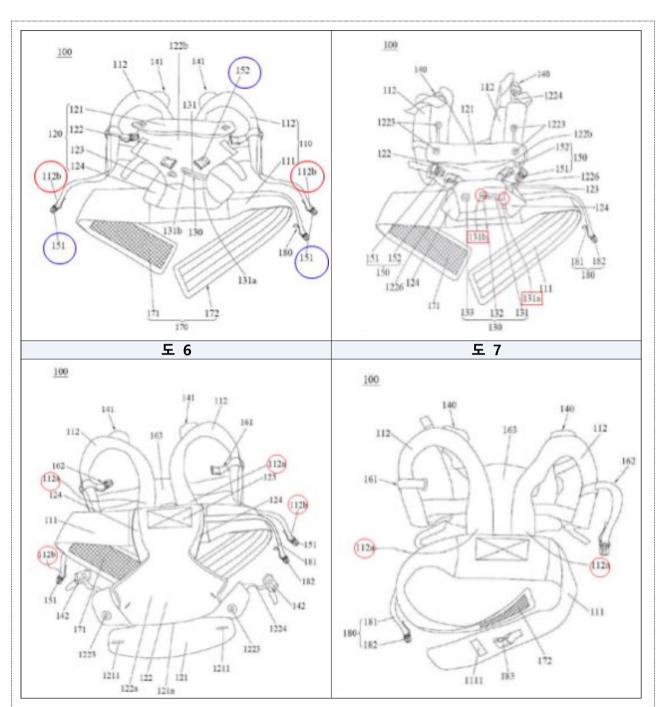
<0008>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어린이 캐리어는, 수용 하네스, 상기 수용 하네스와 연결된 어린이 지지 부분 및 목 지지 부분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덮기 위해 어린이 지지 부분에 장착될 수 있는 턱받이를 포함하며, 상기 어린이 지지 부분은 서로 연결된 목 지지 부분과 몸통 지지 부분을 포함한다. 상기 목 지지 부분은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분에 대해 원하는 수직 위치에 조절하기 위해 몸통 지지 부분 위로 접혀질 수 있으며, 몸통 지지 부분은, 목 지지 부분을 원하는 수직 위치에 고정하고 턱받이를 목 지지 부분에 인접하게 배열하기위해, 목 지지 부분과 턱받이와 결합될 수 있는 복수의 체결 부분들을 포함한다.

데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0> 도 1-9를 보면, 어린이 캐리어(100)의 한 실시예가 도시된다. 어린이 캐리어(100)는 수용 하네스(110)와 어린이 지지 부분(120)을 포함할 수 있다. 어린이 캐리어(100)는 어린이를 보육자의 신체에 가까이 수용하고 이송시키기에 적합할 수 있다.

<0011> 도 1-9를 보면, 수용 하네스(110)는 어린이 캐리어(100)를 장착하고 어린이를 이송시키기 위해 사용될 때 보육자의 신체 주위를 둘러쌀 수 있다. 수용 하네스(110)는 허리 스트랩(111)과 2개의 숄더 스트랩(112)들을 포함할 수 있다. 2개의 숄더 스트랩(112)들은, 각각, 허리 스트랩(111)과 고정 연결된 고정 단부(112a)(도6과 7에 잘 도시됨) 및 어린이 지지 부분(120) 또는 허리 스트랩(111)에 착탈식으로 체결될 수 있는 원위 단부(112b)(도 1 및 6에 잘도시됨)를 가질 수 있다(이제부터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 도 1 | 도 2 |
|-----|-----|



<0014> 도 1-5를 보면, 조절 부분(131)은 힙 지지 부분(123)에 고정 결합된 고정 단부(131a) 및 고정 단부(131a)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위치에서 힙 지지 부분(123)에 착탈식으로 체결되도록 작동될 수 있는 원위 단부 부분(131b)을 가질 수 있다. 조절 부분(131)의 고정 단부(131a)는 2개의 허벅지 지지 부분(124)들 중 하나에 인접한 위치에서 힙 지지 부분(123)에 고정 결합될 수 있다. 조절 부분(131)의 원위 단부 부분(131b)을 힙 지지 부분(123)에 착탈식

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임의의 적절한 체결 구조물(fastening structure)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절 부분(131)은 조절 부분(131)의 고정 단부(131a)로부터 일정 거리에 위치된 개구(132)를 가질 수 있으며, 힙 지지 부분(123)은 조절 부분(131)의 개구(132)와 결합되고 분리될 수 있는 버튼(133)을 가질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조절 부분(131)에는 오직 하나의 개구(132)가 제공된다. 하지만 조절 부분(131)이 다수의 개구(132)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구(132)와 조절 부분(131)의 고정 단부(131a) 사이의 거리는 힙 지지 부분(123)의 폭보다 작을 수도 있다. 버튼(133)은 힙 지지 부분(123)의 폭 방향을 따라 조절 부분(131)의 고정 단부(131a)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위치에서 힙 지지 부분(123)에 고정 결합된다.

<0016> 힙 지지 조절부(130)의 다수의 다양한 구성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구(132)와 버튼(133)의 배열 위치가 상호 교환될 수 있는데, 개구(132) 는 힙 지지 부분(123)에 제공될 수 있으며, 버튼(133)은 조절 부분(131)에 제공될 수도 있다. 한 변형예에 따르면, 조절 부분(131)이 고정 단부에서 힙 지지 부분(123)과 고정 연결되는 대 신에, 조절 부분(131)은 전체적으로 힙 지지 부분(123)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데, 즉 조절 부분(131)은 힙 지지 부분(123)과 착탈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2개의 단부를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변형예에 따르면, 조절 부분(131)은 버클 파스너, 스냅 파스너, 후크 및 루프 파스너, 지 퍼 파스너, 제한 벨트(restraining belt) 등을 사용하여 힙 지지 부분(123)에 체결될 수 있다. <0017> 도 3-5를 보면, 몸통 지지 부분(122)은 헤드 커버(1222)를 수용하도록 구성된 보관 포켓(1221)을 포함할 수 있다. 보관 포켓(1221)은 목 지지 부분(121) 밑에 위치될 수 있으며, 원할 시에 몸통 지지 부분(122)의 외측 표면(122b)에서 개방되고 닫힐 수 있는 개구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관 포켓(1221)을 개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파스너는, 이 들에만 제한되지는 않지만, 지퍼 파스너, 버튼 파스너, 스냅 파스너, 후크 및 루프 파스너 등 을 포함할 수 있다. 헤드 커버(1222)는 어린이의 머리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덮을 수 있도록 형태와 크기로 형성된다. 헤드 커버(1222)를 위한 적절한 재료들의 예는 가요성 재료, 가령, 직물 및 섬유 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 헤드 커버(1222)는 접혀서 보관 포켓(1221) 내에 수용 될 수 있으며, 사용 시에는 외부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헤드 커버 (1222)는 보관 포켓(1221)의 내부와 고정 연결된(예컨대, 나사에 의해) 단부를 가질 수 있으 며, 헤드 커버(1222)는 몸통 지지 부분(122)에 결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헤드 커버(1222)를 우발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헤드 커버(1222)를 몸통 지지 부분(122)에 연 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파스너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필요 시에 헤드 커버(1222)는 몸통 지지 부분(122)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다.

<0018> 도 3-5를 보면, 헤드 커버(1222)가 사용을 위해 펼쳐지면, 헤드 커버(1222)는 보관 포켓(1221)으로부터 목 지지 부분(121)을 가로질러 연장될 수 있으며, 어린이의 머리를 적어 도 부분적으로 덮고 지지하는 데 보조하기 위하여 어린이 캐리어(100)의 2개의 숄더 스트랩 (112)들에 착탈식으로 고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드 커버(1222)는 복수의 체결 부분 (1222a)들(도 5에 잘 도시됨)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체결 부분(1222a)들은 각각 숄더 스트랩 (112)들에 제공된 상응하는 체결 부분(1122)들(도 8에 잘 도시됨)과 결합될 수 있다. 체결 부 분(1222a 및 1122)들은, 이들에만 제한되지는 않지만, 스냅 파스너, 버튼 파스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헤드 커버(1222)는 헤드 커버(1222)의 원위 에지(1222c)로부터 돌출될 수 있는 2개의 벨트 부분(1222b)들과 연결될 수 있으며, 체결 부분(1222a)들은 각각 벨트 부분(1222b)들 상에 제공될 수 있다. 사용하는 동안, 헤드 커버(1222)는 어린이의 머리 를 덮도록 팽창될 수 있으며, 벨트 부분(1222b)들은 숄더 스트랩(112)들을 향해 연장되어 벨 트 부분(1222b)들 상의 체결 부분(1222a)들은 각각 숄더 스트랩(112)들 상의 체결 부분 (1122)들과 결합될 수 있다. 헤드 커버(1222)가 사용 중이지 않을 때에는, 체결 부분(1222a 및 1122)들은 서로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그러면 헤드 커버(1222)는 접혀서 보관 포켓 (1221) 내에 수용될 수 있다. 벨트 부분(1222b)들과 체결 부분(1222a)들은 보관 포켓(1221) 내부에서 헤드 커버(1222)와 함께 보관될 수 있다.

<0020> 도 1-4 및 6을 보면, 목 지지 부분(121)은 위로 접힐 수 있으며 몸통 지지 부분(122)의 상부와 연결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목 지지 부분(121)은 몸통 지지 부분(122)의 좌측면으로부터 우측면으로 횡단 방향으로 연장되는 연결 영역(121a)(도 6에 잘 도시됨)을 따라 몸통 지지 부분(122)의 상부와 고정 연결될 수 있다. 게다가, 목 지지 부분(121)은, 각각, 2개의 체결 부분(1211)들(도 6에 잘 도시됨)이 제공된 연결 영역(121a)의 방향을 따라 서로 횡단 방향으로 맞은편에 있는 2개의 단부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 몸통 지지 부분(122) 각각의 좌측 및 우측면은 목 지지 부분(121)의 체결 부분(1211)들과 결합되고 이들로부터 분리되도록 작동될 수 있는 복수의 체결 부분(1223)들을 가질 수 있다. 체결 부분(1223)들은 보관 포켓(1221)의 좌측 및 우측면들에 분포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목지지 부분(121)에 제공된 체결 부분(1211)들은 개구일 수 있으며, 몸통 지지 부분(122)에 제공된 체결 부분(1223)들은 체결 부분(1211)들과 결합되고 이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버튼일수 있다. 각각의 좌측 및 우측면에서 체결 부분(1223)들은 몸통 지지 부분(122)의 외측 표면(122b)에 제공될 수 있으며, 어린이 지지 부분(120)의 길이 방향 축(lengthwise axis)에 대해일반적으로 평행하게 일렬로 배열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몸통 지지 부분(122)은 4개의 체결 부분(1223)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몸통 지지 부분(122)의 좌측 및 우측면에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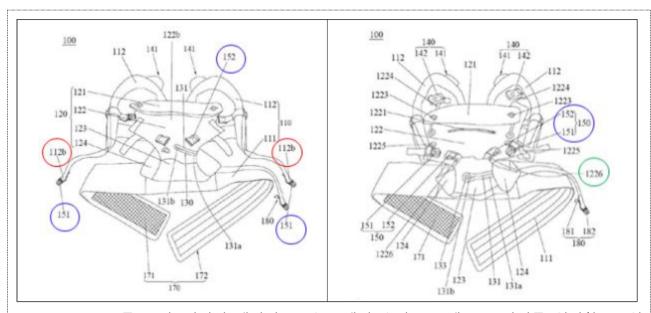
2개의 체결 부분(1223) 세트가 제공된다.

<0023> 본 명세서에 기술된 목 지지 부분(121)은 어린이의 머리를 위한 적절한 지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의 크기에 따라 용이하게 조절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목 지지 부분(121)은 어린이를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

<0024> 도 1-7을 보면, 어린이 지지 부분(120)과 숄더 스트랩(112)들은 결합 조립체(140 및 150)에 의해 서로 착탈식으로 고정될 수 있다. 결합 조립체(140)는 서로 결합되며 서로로부터 분리되도록 작동될 수 있는 두 세트의 커넥터(141 및 142)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개의 커넥터(141)들은 각각 2개의 숄더 스트랩(112)들에 결합될 수 있으며, 2개의 커넥터(142)들은 각각 2개의 벨트 부분(1224)들에 의해 몸통 지지 부분(122)의 좌측 및 우측면에 걸릴 수 있다(appended).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커넥터(141)는 숄더 스트랩(112)에 원위단부(112b)와 고정 단부(112a) 사이의 중간 위치에서 상응하는 숄더 스트랩(112)에 결합될수 있다. 2개의 벨트 부분(1224)들은 각각 몸통 지지 부분(122)의 상부에 결합될 수 있으며합 지지 부분(123)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위치되고, 각각의 커넥터(142)는 상응하는 벨트 부분(1224)에 결합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2개의 벨트 부분(1224)들은 몸통 지지 부분(122)의 상부에 인접한 몸통 지지 부분(122)의 내측 표면(122a)에 결합될 수 있다. 몸통 지지부분(122)과 커넥터(142) 사이의 각각의 벨트 부분(1224)의 길이는 어린이 캐리어(100)에 수용된 어린이의 크기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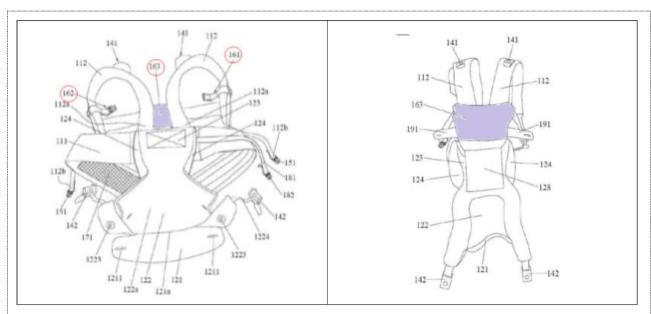
<0025> 도 1-4를 보면, 결합 조립체(150)는 서로 결합되고 서로로부터 분리되도록 작동될수 있는 두 세트의 커넥터(151 및 152)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개의 커넥터(151)들은 각각 2개의 숄더 스트랩(112)에 결합될 수 있으며, 2개의 커넥터(152)들은 각각 조절 부분 (131)과 힙 지지 부분(123) 위에서 몸통 지지 부분(122)에 결합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커넥터(151)는 숄더 스트랩(112) 고정 단부(112a)의 맞은편에 위치된 상응하는 숄더 스트랩(112)의 원위 단부(112b)에 걸릴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각각의 커넥터(151)는, 숄더 스트랩(112)의 고정 단부(112a)와 커넥터(151) 사이의 숄더 스트랩(112)의 길이가 조절될 수 있도록, 숄더 스트랩(112)에 조절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커넥터(152)들은 힙 지지 부분(123)에 인접하게 위치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각각의 커넥터(152)는 몸통 지지 부분(123)의 외측 표면(122b)에 고정될 수 있는 탭(1226)에 걸릴 수 있다.

도 1 도 4



<0030> 도 6-9를 보면, 어린이 캐리어(100)는 2개의 숄더 스트랩(112)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스트랩 제한 조립체(160)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스트랩 제한 조립체(160)는 2개의 숄더 스트랩(112)을 보육자의 어깨 위에 제한하여 위치되도록 작동될 수 있으며, 2개의 스트랩체결 조립체(161 및 162)들과 연결 부분(163)을 포함할 수 있다. 연결 부분(163)을 위한 적절한 재료들의 예는, 이들에만 제한되지는 않지만, 가요성 재료, 가령, 직물 또는 이와 유사한섬유 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 연결 부분(163)은 2개의 숄더 스트랩(112) 사이에 배열되고 서로 맞은편에서 두 숄더 스트랩(112)들과 연결될 수 있으며, 허리 스트랩(111)에 인접하게 위치될 수 있다. 연결 부분(163)은 숄더 스트랩(112)들이 제한하여 위치되도록 보조할 수 있다. 2개의 스트랩 체결 조립체(161 및 162)들은 각각 조절을 위해 2개의 숄더 스트랩(112)들을 따라 슬라이딩 이동될 수 있으며, 스트랩 제한 조립체(160)를 체결하거나 분리하기 위해 서로 결합되거나 분리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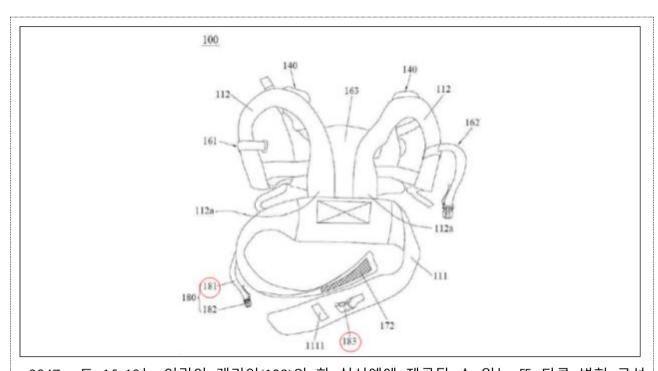
| 도 6 | 도 7 |
|-----|-----|



<0033> 어린이 캐리어(100)가 보육자의 신체에 장착될 때, 연결 부분(163)은 보육자의 몸통 앞에 위치될 수 있으며, 암의 파스너(1613)와 수의 파스너(1623)는 2개의 숄더 스트랩(112)들 이 보육자의 몸통 위에 제한하여 위치되도록 보육자의 등에서 서로 결합될 수 있다.

<0035> 도 7을 보면, 허리 스트랩(111)은 허리 스트랩(111)을 보육자의 허리 주위에 고정하도록 작동될 수 있는 고정 하네스(180)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고정 하네스(180)는 조임 벨트(181) 및 2개의 체결 부분(182 및 183)들을 포함할 수 있다. 조임 벨트(181)는 허리 스트랩(111)과 고정 연결된 한 단부를 가질 수 있고, 체결 부분(182)은 조임 벨트(181)와 조절 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으며, 체결 부분(183)은 허리 스트랩(111)과 고정 연결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체결 부분(182 및 183)들은 서로 결합되도록 작동될 수 있는 수 및 암의 버클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 시에, 허리 스트랩(111)이 결부 시스템(170)으로 보육자의 허리 주위에 고정된 후에, 조임 벨트(181)는 허리 스트랩(111)의 2개의 단부를 가로질러 연장되도록 늘어날 수 있어서, 조임 벨트(181) 상의 체결 부분(182)은 허리 스트랩(111) 상의 체결 부분(183)과 결합될 수 있다. 그에 따라, 허리 스트랩(111)은 보육자의 허리 주위에 타이트하게 고정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허리 스트랩(111)은 허리 스트랩(1111)의 단부와체결 부분(183) 사이에 배열된 가이드 루프(1111)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가이드 루프(1111)는 조임 벨트(181)가 용이하게 배치될 수 있게 하는데, 조임 벨트(181)는 체결 부분(182)을 체결 부분(183)과 결합하기 위해 가이드 루프(1111)를 통과할 수 있다.

도 7



<0047> 도 16-19는 어린이 캐리어(100)의 한 실시예에 제공될 수 있는 또 다른 변형 구성을 개략적으로 예시한 도면이다. 도 16-19를 보면, 목 지지 부분(121)은 파스너에 의해 몸통지지 부분(122)의 상부에 착탈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파스너의 한 예는 지퍼 파스너(126)일 수 있다. 파스너는 목 지지 부분(121)을 몸통 지지 부분(122)에 연결하도록 결합될 수 있으며, 몸통 지지 부분(122)으로부터 목 지지 부분(121)을 제거하도록 분리될 수 있다. 그에따라, 보육자는 필요 시에 목 지지 부분(121)을 용이하게 제거하고 장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 지지 부분(121)은 세척 또는 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몸통 지지 부분(122)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도 16-19의 예에서는 지퍼 파스너가 사용되지만, 목 지지 부분(121)을 몸통 지지 부분(122)과 착탈식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그 밖의 파스너들도 사용될 수 있으 며, 이러한 파스너들은, 이들에만 제한되지는 않지만, 스냅 파스너, 버튼 파스너, 후크 및 루프파스너 등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지지 부분(121)이 몸통 지지 부분(122)과 연결되고 나면, 목 지지 부분(121)은 앞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몸통 지지 부분(122)에 대해 목 지지 부분(121)의 수직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 몸통 지지 부분(122) 위로(예컨대, 지퍼 파스너(126)를 따라) 접힐 수 있다. 앞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체결 부분(1211 및 1223)들은 목 지지 부분(121)의 수직 위치를 고정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0052> 도 22-26은 어린이 캐리어(100)의 한 실시예에 제공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부를 개략적으로 예시한 도면이다. 도 22-26을 보면, 어린이 캐리어(100)는 팽창성 부분(128)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팽창성 부분(128)은, 몸통 지지 부분(122)과 수용 하네스(110) 사이의

최대 바닥 거리(greatest bottom distance)를 조절하도록 작동될 수 있으며, 특히 한 단부에 서 몸통 지지 부분(122)과 다른 단부에서는 허리 스트랩(111) 또는 허리 스트랩(111)에 인접 한 한 영역, 숄더 스트랩(112) 및/ 또는 연결 부분(163) 사이의 최대 바닥 거리를 조절하도록 작동될 수 있다. 팽창성 부분(128)은 패널, 스트립, 밴드 등일 수 있다. 팽창성 부분(128)을 위한 적절한 재료의 예는, 이들에만 제한되지는 않지만, 가요성 재료, 가령, 직물, 섬유 제품 을 포함할 수 있다. 팽창성 부분(128)은 힙 지지 부분(123) 위에 배열될 수 있다. 팽창성 부 분(128)의 한 단부(128a)(도 23에 잘 도시됨)가 허리 스트랩(111)에 고정될 수 있거나 또는 허리 스트랩(111)과 어린이 지지 부분(120) 사이의 서로 인접한 연결 영역에서 어린이 지지 부분(120)에 고정될 수도 있다. 상기 단부(128a)의 맞은편에 위치된, 팽창성 부분(128)의 또 다른 단부(128b)(도 23에 잘 도시됨)는 바닥에 인접하게, 예컨대, 힙 지지 부분(123)과 몸통 지지 부분(122) 사이의 연결부에 인접하게 몸통 지지 부분(122)에 고정될 수 있다. 팽창성 부 분(128)은 몸통 지지 부분(122)을 수용 하네스(110)에 연결하는 조절 가능한 유효 길이 (adjustable effective length)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유효 길이는 수용 하네스(110)와 몸 통 지지 부분(122) 사이에서 가능한 최대 바닥 거리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팽창성 부 분(128)은 팽창성 부분(128)의 유효 길이를 변경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용 하네 스(110)와 몸통 지지 부분(122) 사이의 최대 바닥 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작동될 수 있는 체결 구조물(1281)과 연결될 수 있다. 체결 구조물(1281)이 수용 하네스(110)와 몸통 지지 부 분(122) 사이의 최대 바닥 거리를 줄이도록 구성되면, 팽창성 부분(128)의 유효 길이는 두 단 부(128a 및128b) 사이의 팽창성 부분(128)의 전체 길이보다 더 작을 수 있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1호증)

2009. 10. 7.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09-0010149호에 게재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 **기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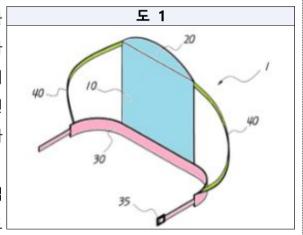
<1> 본 고안은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아기가 하방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지지할 수 있고, 목받침의 수용이 가능하며, 업기, 앞보기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신생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휴대가 간편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에 관한 것이다.

대 **배경기술**

<2> 도 1은 종래의 기술이 적용된 아기띠를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종래의 기술이 적용

된 아기띠를 이용해 아기를 등에 업은 상태를 도시한 예시도, 도 3은 종래의 기술이 적용된 아 기띠로써, 뒤로 업는 기능만 구비한 경우, 아기 가 전방을 보도록 아기 엄마의 가슴에 밀착시킨 상태를 도시한 예시도로서, 종래 기술의 구성과 사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일반적으로 아기띠(1)는 아기(B)를 등에 업 거나 앞으로 안을 때, 아기(B)가 몸에 밀착되도



록 결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아기(B)를 덮을 수 있도록 직물지로 형성된 등판 (10)과 상기 등판(10)의 하방에 부착되어 허리에 감기어 결착되도록 구성된 허리밴드(30)와 상기 허리밴드(30)와 등판(10)의 양쪽에 연결되어 양 어깨에 걸리는¹⁾ 어깨밴드(40)와 상기 등판(10)의 상단에서 상방으로 돌출되어 아기(B)의 머리를 받치도록 직물지로 형성된 목받침(20)으로 구성된다. 상기 어깨밴드(40)는 버클(미도시) 등에 의해 분리 또는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성되고 길이 가변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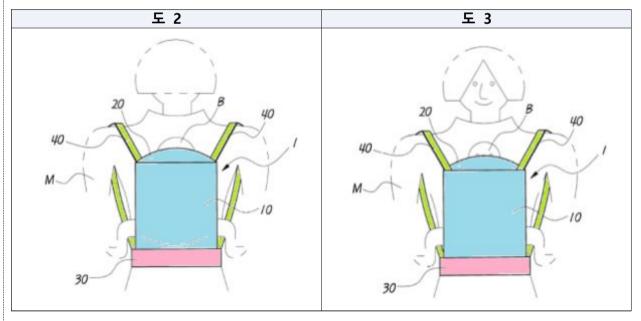
<4> 상기 허리밴드(30)를 결착 및 해제시키기 위해서 일측 종단 또는 양측 종단에 버클 등으로 구성되는 결착수단(35)을 고정하게 된다.

<5> 상기 종래 기술을 사용하여 아기(B)를 몸에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등판(10)이 후

방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상기 허리밴드(30)를 허리에 감아서 결착한 후, 등판(10)이 하 방으로 내려가도록 한다. 그리고 아기(B)를 등에 업고 한 손으로 아기(B)를 붙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등판(10)을 올려서 어깨밴드(40)에 양팔을 넣어 어깨밴드(40)가 어깨에 걸쳐지도록 한다. 그러면, 도 2에서처럼, 아기(B)를 등에 업은 상태가 된다.

<6>물론, 상기 어깨밴드(40)는 길이 가변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등판(10)이 아기(B)를 가압되도록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아기 엄마(M)는 아기(B)와 함께 외출을 할 수 있다.

<7> 아기(B)를 앞으로 안은 상태에서 아기(B)가 전방을 보도록 결속시킬 때에는 따로 앞보기용 아기띠(미도시)를 구비하여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데, 이 경우, 상기 아기띠(1)의 구성에서 전방 시야가 확보되도록 목받침(20)이 형성되지 않으며, 등판(미도시)의 하방이 좁게 형성되어 아기(B)의 다리가 용이하게 하방으로 내려오도록 형성됨으로써, 아기(B)를 가슴에 안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때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8> 상기 종래 기술에 의한 아기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9> 첫째, 허리밴드를 허리에 감아서 결착한 상태에서 아기를 등에 업거나 가슴에 안을 때, 아기가 낙상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아기를 업거나 안을 때, 아기를 붙잡아줄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다. 즉, 아기 엄마 혼자서는 안전하게 아기띠를 착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10>둘째, 도 3에서처럼 업기용으로 구성된 아기띠를 사용하여 앞보기 상태가 되도록 아기를 결속할 경우, 목받침에 의해 아기의 시야가 가려지게 되고, 등판의 하방이 좁지 않아서 아기의 다리가 벌어지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역시, 앞보기용으로 구성된 아기띠를 업기용으로 사용할 경우, 목받침이 없어서 아기의 목을 지지할 수 없었고, 등판의 하방이좁으므로 아기의 엉덩이를 용이하게 지지할 수 없었다. 즉, 하나의 아기띠로 업기용 내지는 앞보기용으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11> 셋째, 허리밴드의 결착 상태를 해제할 경우, 아기가 하방으로 낙하하게 되어 다치는 예가 많았고, 신생아의 경우 체구가 작음으로써 허리밴드를 느슨하게 결착했을 경우, 허리밴드 하방으로 낙하하여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12> 넷째, 종래 기술에 의하면, 신생아의 경우 다리를 벌린 상태로 아기 엄마에게 밀착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아기에게는 큰 무리가 따르게 된다. 이 경우에는 아기의 다리를 하방으로 가지런히 내려오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종래 기술에 의하면 불가능하다.

<13> 다섯째, 신생아용의 아기띠로 겸용할 수 없었다. 아기가 3개월이 안 된 신생아로서체구가 작을 경우에는 종래의 아기띠로 아기 엄마의 몸에 결속될 때, 아기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었다. 즉, 다리를 벌린 상태로 아기 엄마의 등에 밀착됨으로써, 아기의 다리가 벌어진 상태가 되므로 아기의 연약한 다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목과 허리를 효율적으로 가눌 수 없었다. 통상적으로 신생아의 경우, 아기가 상방으로 보고 누운 상태가되도록 품에 안았을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가 되지만, 종래의 아기띠로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체구가 작아서 허리밴드 하방으로 낙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따라서, 신생아용으로 제작된 주머니 형상의 아기띠를 구비해서 사용하다가 다시체구가 큰 아기들을 위한 아기띠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4> 여섯째, 휴대를 위해서 말아서 가방에 넣게 되는데, 말아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어, 금세 펴지고 흐트러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휴대가 불편하였다.

리 과제의 해결수단

<15> 본 고안에 의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는 아기를 덮을 수 있도록 직물지로 형성된 등판과 상기 등판의 하방에 부착되어 허리에 감기어 결착되는 허리밴드와 상기 허리밴드와 등판의 양측에 연결되어 양 어깨에 걸리는 어깨밴드와, 상기 등판의 상단에서

상방으로 돌출되어 아기의 머리를 받치도록 형성된 목받침으로 구성된 아기띠에 있어서; 상기 등판의 내측면에 양 측방부가 부착되고 하단부가 부착된 직물지인 수용주머니가 구 성되고, 상기 허리밴드에 아기의 사타구니를 커버하여 지지하는 지지커버가 부착되어 구 성되며, 상기 지지커버의 종단부에 상기 어깨밴드가 연결되어 구성되고, 상기 어깨밴드의 종단부에 상부결속수단이 연결되고, 상기 상부결속수단과 지지커버 사이에 위치하도록 미 들결속수단이 상기 어깨밴드에 연결되어 구성되고, 상기 등판의 상단 양측에 상기 미들결 속수단에 탈착되는 결속수단이 연결되어 구성되도록 한다.

마 작용효과

<16> 본 고안에 의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7> 첫째, 본 고안을 착용할 때, 아기가 수용주머니 내지는 지지커버에 의해 하방이 지지됨으로써, 도와주는 사람 없이 아기 엄마 혼자서 배낭을 매듯이 본 고안을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이때, 상기 수용주머니와 지지커버에 의해 아기가 하방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방지된다.

<18> 둘째, 허리밴드의 결착 상태를 해제하더라도 패드와 지지커버에 의해 아기의 하방이 지지됨으로써, 어깨밴드가 어깨에 걸려 있기만 하면, 아기가 하방으로 낙하하지 않게된다.

<19> 세째, 본 고안에 의한 커버를 이탈시키게 되면, 아기의 다리를 하방으로 가지런히 내려오게 할 수 있으므로, 아기가 다리를 벌린 상태로 아기 엄마에게 밀착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경우, 앞보기 시, 아기의 다리가 하방으로 용이하게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도 15에서처럼 아기를 앞보기 한 상태로 안은 경우, 목받침을 등판 내부로 수용할 수 있으므로 아기의 전방 시야가 가려지는²⁾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업기 및 앞보기용으로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 넷째, 신생아의 경우, 수용주머니에 수용시킴으로써, 체구가 작고 연약한 아기도 하방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아기 엄마의 신체에 밀착될 수 있으므로, 신생아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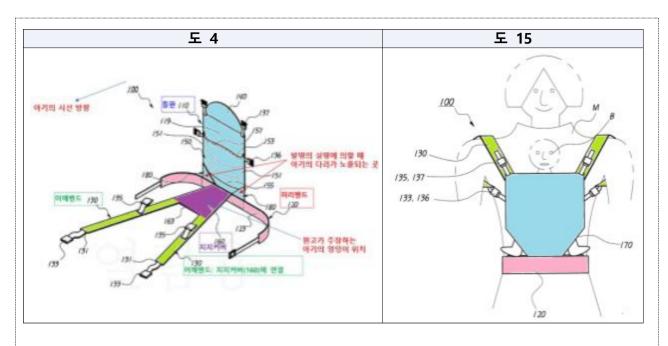
<21> 다섯째, 결속밴드에 의해 말아진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휴대가 간편하다.

빠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23> 도 4는 본 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를 도시한 사시 도, 도 5는 본 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를 도시한 정면도, 도 6은 본 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에 구성되는, 목받침이 등판 내부에 수용되는 과정을 도시하기 위해, 도 5의 C-C'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7은 본 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에 구성되는 측방 커버가 이탈 되어 주머니에 수용되는 예를 도시한 국부 절개 사시도, 도 8은 본 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에 구성되는 모자가 등판의 내부에 수용되어 부착되는 예 를 도시한 단면도, 도 9는 본 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에 모자가 이탈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 도 10은 본 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능 을 가지는 아기띠에 구성되는 수용주머니에 아기가 수용된 상태를 도시한 예시도, 도 11 은 본 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에 구성되는 수용주머니 위 에 아기가 얹혀진 상태를 도시한 예시도, 도 12는 본 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 능을 가지는 아기띠로서 지지커버를 올려서 아기를 덮고, 어깨밴드를 등판에 연결한 예를 도시한 예시도, 도 13은 본 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를 이 용해서 아기를 등에 업은 상태를 도시한 예시도, 도 14는 본 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를 이용해서 아기를 등에 업은 상태로서 측방 커버를 주머니에 수용하여 아기의 다리가 노출되어 하강하도록 한 상태를 도시한 예시도, 도 15는 본 고안 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를 이용해서 아기를 앞보기 상태로 엄 마의 전방으로 밀착되도록 한 상태를 도시한 예시도, 도 16은 본 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로서 결속밴드가 허리밴드에 부착된 예를 도시한 정면도, 도 17은 본 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하방 받침 기능을 가지는 아기띠가 말려진 상태가 유지 되도록 결속밴드가 감기어 부착된 예를 도시한 정면도로서 함께 설명한다.

¹⁾ 명세서에는 "걸려지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걸리는"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 이하 같다.

²⁾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가려지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리는"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



<24> 일반적으로 아기띠(100)는 아기(B)를 등에 업거나 앞으로 안을 때, 아기(B)가 몸에 밀착되도록 결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아기(B)를 덮을 수 있도록 직물지로 형성된 등판(110)과 상기 등판(110)의 하방에 부착되어 허리에 감기어 결착되도록 구성된 허리밴드(120)와 상기 허리밴드(120)와 등판(110)의 양쪽에 연결되어 양 어깨에 걸리는 어깨밴드(130)와 상기 등판(110)의 상단에서 상방으로 돌출되어 아기(B)의 머리를 받치도록 직물지로 형성된 목받침(140)으로 구성된다.

<28> 또한 상기 어깨밴드(130)가 등판(110)에 연결되기 위해서, 상기 허리밴드(120) 내측면(123, 신체가 접하는면)에 아기(B)의 사타구니를 커버하여 지지하는 지지커버(160)가 부착되고, 상기 지지커버(160)의 종단부(163)에 상기 어깨밴드(130)가 연결되어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어깨밴드(130)가 등판(110)에 착탈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깨밴드(130)의 종단부(131)에 상부결속수단(133)이 연결되고, 상기 상부결속수단(133)과 지지커버(160) 사이에위치하도록 미들결속수단(135)이 또한 어깨밴드(130)에 연결되어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등판(110)에 있어서 상단 양측에 상기 미들결속수단(135)에 탈착되는 결속수단(137)이 연결되고, 상기 등판(110)에 있어서 결속수단(137) 하방의 양측에 상기 상부결속수단(133)에 착탈되는 결속수단(136)이 연결된다.

<31> 또한 상기 목받침(140)이 등판(110) 내측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등판(110)의 상부는 신체에 접하는 내측판(111)과 그 상대측인 외측판(113)이 구성되어 양측과 하방이 부착

됨으로써 내측판(111)과 외측판(113) 사이에는 수용공간(115)이 형성된다.

<32> 상기 수용공간(115) 내부에 목받침(140)이 수용되어 내측판(111)에 부착되어 구성됨으로써 상기 목받침(140)을 접어서 수용공간(115) 내부로 집어넣을 수 있다.

<33> 상기 수용공간(115) 내부에 있어서 외측판(113)에 탈착수단(117)이 부착되어 구성되는데, 상기 탈착수단(117)은 벨크로테이프 내지는 프레스버튼 중 하나로 구성할 수 있다.

<34> 또한 본 고안에는 아기(B)의 머리에 씌우는 모자(200)를 더 구성할 수 있다. 상기모자(200)는 후방 하단에 연장부(210)가 형성되고, 상기 연장부(210)의 외측면에 상기 외측판(113)에 부착된 탈착수단(117)에 부착되거나 분리되는 탈착수단(220)이 부착되어 구성된다.

<35> 상기 탈착수단(220)은 벨크로테이프 내지는 프레스버튼으로 사용 가능한데, 벨크로테이프일 경우에는 모자(200)의 연장부(210)에 부착된 벨크로테이프를 수직으로 길게 형성함으로써, 모자(200)의 등판(110)에 부착되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36> 프레스버튼으로 할 경우에는 연장부(210) 내지는 외측판(113)에 수직으로 다수 개의 프레스버튼이 부착되도록 함으로써, 모자(200)의 등판(110)에 부착되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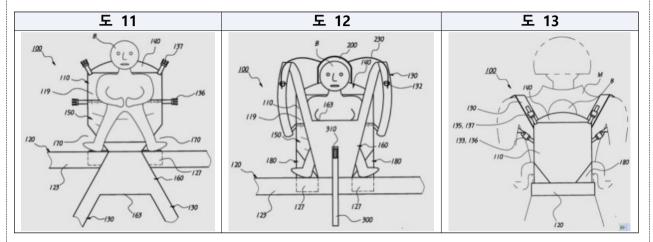
<39> 상기 구성에 의한 본 고안의 사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아기(B)가 서너 살 된 경우에는 도 11에서처럼, 수용주머니(150) 위에 아기(B)를 놓게 된다. 이 상태에서 상기 미들결속수단(135)을 등판(110)의 상단에 구성된 결속수단(137)에 연결하게 되면, 지지커버(160)가 아기(B)를 앉힐 수 있도록 하방을 지지하게 된다. 그리고, 어깨밴드(130)를 전방으로 만곡 시켜서 상부결속수단(133)을 등판(110)의 측방에 연결된 결속수단(136)에 연결시키면, 팔을 넣어서 어깨에 걸칠 수 있게 된다.

<42> 따라서, 이 상태에서 배낭을 매듯이 아기(B)가 지지된 아기띠(100)를 들고서 어깨밴드(130)에 팔을 넣어 어깨에 걸치고 나서, 허리밴드(120)를 허리에 감아서 결속시키면, 착용이 완료된다. 따라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아기 엄마(M) 혼자서 아기띠(100)를 착용할 수있는 이점이 있다.

<43> 이때, 아기(M)의 다리는 도 13에서처럼 벌어진 상태가 되는 데, 이 경우, 아기(B)가 3세 미만일 경우 골반이 무리하게 벌어져 무리가 갈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커버(180)를 이탈시켜 상기 허리밴드(120)에 형성된 주머니(127)에 접어 넣음으로써, 양측 하단이 오목하

게 된다. 따라서 상기 오목한 부분(170)을 통해서 아기(B)의 다리가 하방으로 내려오도록 함으로써, 아기(B)의 다리가 벌어져서 무리가 가는 현상이 방지된다.



<44> 상기 커버(180)를 등판(110)에 부착한 경우에는 상기 주머니(127)에 핸드폰이나 손수건 내지는 지갑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5> 도 15에처럼, 아기(B)를 앞으로 안아서 앞보기를 할 경우에는 목받침(140)을 도 6에 서처럼, 접어서 등판(110) 내부에 수용시킨다. 그러면 아기(B)는 용이하게 전방을 주시할 수 있게 된다. 필요 시, 상기 목받침(140)을 상방으로 끄집어 내어 아기(B)의 머리를 받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상기 커버(180)를 이탈시켜 주머니(127)에 수용함으로써, 아기(B)의 다리가 전방으로 용이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앞보기가 용이하도록 착용할 수 있다.

2) 선행발명 2(을 제2호증)

2014. 2. 18.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 '힙시트 아기띠'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어깨부분의 패드가 무척 푹신해서 어깨가 아프지도 않고 허리벨트도 넓으면서 이중벨트라서 정말 안전하거든요. 슬리핑후드 부분은 천연소재인 마이크로 모달로 되어 있어서 아기 피부에 전혀 자극도 없고요. 무엇보다 힙시트 겸용 아기띠여서 정말 맘에 들었어요(<2쪽>).



보기에도 무척 도톰해 보이죠? 실제로 재어보면 무려 20mm의 두께로 매우 쿠션감이 좋고 폭신해서 어께에 전혀 무리가 없어요.

파베 아기띠는 생후 3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직 몸에 힘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목받침대를 사용하면 더욱 안정감 있어요(<8, 9쪽> 참조).

목받침대 양 옆에 있는 고리를 양 어깨끈에 고정시키면 되구요.

이는 지퍼 형태로 캐리어부분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좀 크면 떼어내시면 된답니다(<10쪽> 참조).



파베 아기띠는 앞으로 안기, 뒤로 업기, 힙시트로 정면보기나 마주안기, 옆으로 안기 모두 가능한데요. 저는 뒤로 업기도 잘 하는 편이지만 외출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외투를 입어야 해서 앞보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면 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갓 돌이 지난 우리막내. 그래서 목받침대는 떼어낸 상태에요. 다리가 쫘악 벌어진 거 보이시죠? 다리가 벌어져야 아기의 고관절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아기띠랍니다(<23, 24쪽> 참조).



옆에서 보시면 힙시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힙시트가 아기 엉덩이 쪽으로 위로 올라와 있어서 아기가 엄마와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구요. 10키로가 넘는 아기를 안고 있어도 엄마의 허리와 어깨는 아주 짱짱하다는~(<25쪽> 참조).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특허청 심사관은 2020. 7. 23.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인용발명들³⁾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2) 원고는 2020. 10. 2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14 등을 보정하였으나, 특

³⁾ 인용발명 1은 선행발명 1과 동일한 발명이고, 인용발명 2는 미합중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14/0263491호에 게재된 발명, 인용발명 3은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15-131026호에 게재된 발명이다.

허청 심사관은 2021. 2. 10. 위 2020. 7. 23.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 3) 원고는 2021. 4. 1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14 등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5. 1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은 인용발명 1, 24)에 의하여, 청구항 4와 5는 인용발명 1, 2, 35)에 의하여, 청구항 6 내지 9, 13은 인용발명 1, 2, 46)에 의하여, 청구항 14 내지 17은 인용발명 1, 3, 4에 의하여, 청구항 10 내지 12, 18, 19는 인용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4) 원고는 2021. 8. 17. 청구항 1, 14 등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5. 17.자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2. 16. 재심사 특허거절 결정을 하였다.
- 5) 원고는 2022. 3. 11. 특허심판원에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2022원538호), 특허심판원은 2022. 8. 3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7)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⁴⁾ 인용발명 1은 선행발명 1. 인용발명 2는 선행발명 2와 각 동일한 발명이다.

⁵⁾ 인용발명 3은 미합중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14/ 0263491호에 게재된 발명이다.

⁶⁾ 인용발명 4는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15-131026호에 게재된 발명이다.

⁷⁾ 비교대상발명 1은 선행발명 1. 비교대상발명 2는 선행발명 2와 각 동일한 발명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들이 허리 스트랩과 직접 연결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어깨밴드가 지지커버에 의하여 허리밴드에 간접 연결되므로, 구성이 상이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들이 허리 스트랩과 직접 연결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선행발명 1에서와 같이 숄더 스트랩이 지지커버 등에 의해 간접 연결된 것을 포함한다.
- 2) 설령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고정 단부들이 허리 스트랩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1의 지지커버는 어깨밴드를 허리밴드에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2개의 어깨밴드가 허리밴드로 직접 연결되도록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 구성 요소 | 이 사건 제1항 발명(갑 제1호증의6) | 선행발명 1(을 제1호증) |
|----------|--------------------------|--------------------------|
| 1 | 어린이 캐리어에 있어서, 상기 어린이 캐리어 | 아기를 덮을 수 있도록 직물지로 형성된 등판 |
| | 는 허리 스트랩과 2개의 숄더 스트랩을 포함 | 과 상기 등판의 하방에 부착되어 허리에 감기 |

| 구성 요소 | 이 사건 제1항 발명(갑 제1호증의6) | 선행발명 1(을 제1호증) |
|----------|---------------------------|-------------------------------|
| | 하는 수용 하네스 및 상기 수용 하네스와 연 | 어 결착되는 허리밴드와 상기 허리밴드와 등판 |
| | 결된 어린이 지지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어 | 의 양측에 연결되어 양 어깨에 걸리는 어깨밴 |
| | 린이 지지 부분은 파스너에 의해 서로 착탈 | 드와 상기 등판의 상단에서 상방으로 돌출되어 |
| | 식으로 연결된 목 지지 부분과 몸통 지지 부 | 아기의 머리를 받치도록 형성된 목받침으로 구 |
| | 분을 포함하되 | 성된 아기띠에 있어서; |
| | | 상기 등판의 내측면에 양 측방부가 부착되고 |
| | | 하단부가 부착된 직물지인 수용주머니가 구성 |
| | | 된다(식별번호 <15>, 청구항 1 등). |
| 2 | 상기 파스너는 목 지지 부분을 몸통 지지 부 | 상기 목받침(140)이 등판(110) 내측으로 수용이 |
| | 분과 연결하기 위해 결합되고 목 지지 부분 | 가능하도록 (중략) 내측판(111)과 외측판(113) |
| | 을 몸통 지지 부분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 사이에는 수용공간(115)이 형성된다(식별번호 |
| | 분리되며 | <31>). |
| | | 수용공간(115) 내부에 목받침(140)이 수용되어 |
| | | 내측판(111)에 부착되어 구성됨으로써 상기 목 |
| | | 받침(140)을 접어서 수용공간(115) 내부로 집어 |
| | | 넣을 수 있다(식별번호 <32>). |
| 3 | 2개의 숄더 스트랩들은, 각각, 허리 스트랩과 | 어깨밴드는 허리밴드와 등판의 양측에 연결되 |
| | 인접하게 고정 연결된 개별 고정 단부 및 몸 | 어 양 어깨에 걸린다. 상기 허리밴드에 아기의 |
| | 통 지지 부분 또는 허리 스트랩에 착탈식으 | 사타구니를 커버하여 지지하는 지지커버가 부 |
| | 로 체결되도록 작동될 수 있는 원위 단부를 | 착되어 구성되며, 상기 지지커버의 종단부에 |
| | 가지고, 2개의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들은 | 상기 어깨밴드가 연결되어 구성되고, 상기 어 |
| | 각각 2개의 이격 위치에서 허리 스트랩과 고 | 깨밴드의 종단부에 상부결속수단이 연결되고, |
| | 정 연결되며 2개의 숄더 스트랩들은 허리 스 | (중략) 상기 결속수단 하방의 등판 양측에 상 |
| | 트랩으로부터 원위 단부들로 서로로부터 멀 | 기 상부결속수단에 착탈되는 결속수단이 연결 |
| | 어지는 방향으로 연장되고 | 되어 구성된다(식별번호 <15>, <28>, 청구항 |
| | | 1). |
| | | 2개의 어깨밴드(130)의 종단부(131)는 허리밴 |
| | | 드(120)로부터 멀수록 서로 멀어진다(도면 4, |
| | | 5, 9). |
| 4 | 몸통 지지 부분은 원위 단부와 고정 단부 사 | 상부결속수단과 지지커버 사이에 위치하도록 |

| 구성 요소 | 이 사건 제1항 발명(갑 제1호증의6) | 선행발명 1(을 제1호증) |
|----------|--------------------------|---------------------------|
| | 이의 중간 위치에서 2개의 숄더 스트랩 각각 | 미들결속수단이 어깨밴드에 연결되어 구성되고, |
| | 에 착탈식으로 체결되도록 작동될 수 있는 | 등판의 상단 양측에 상기 미들결속수단에 탈착 |
| |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캐리어. | 되는 결속수단이 연결된다(식별번호 <15>). |

2)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허리 스트랩[허리밴드]8)과 2개의 숄더 스트랩[지지커버와 그 종단부에 연결된 2개의 어깨밴드]을 포함하는 수용 하네스[허리밴드, 지지커버와 어깨밴드] 및 상기 수용 하네스[허리밴드, 지지커버와 어깨밴드]와 연결된 어린이 지지 부분[등판, 목받침]을 포함하는 어린이 캐리어로서, 어린이 지지 부분[등판, 목받침]이 서로 연결된 목 지지 부분[목받침]과 몸통지지 부분[등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에 개시된 어린이 지지 부분의 목지지 부분과 몸통 지지 부분은 파스너에 의해 탈착식으로 연결되어 필요에 따라 탈착이 가능한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인 목받침과 등판은 탈착식이 아니라는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선행발명 1에는 탈착을 위한 파스너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나) 구성요소 3

(1) "2개의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들이 허리 스트랩과 인접하게 고정 연결된 다"는 의미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중 "2개의 숄더 스트랩의 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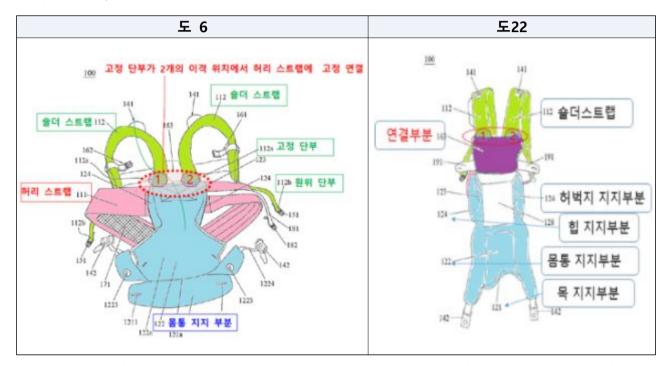
⁸⁾ 대괄호로 표시된 것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단부들이 허리 스트랩과 인접하게 고정 연결된다"라는 부분은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들)이 허리 스트랩에 직접 연결된다는 의미인데, 선행발명 1은 어깨밴드가 지지커버에 연결되어 있을 뿐 허리밴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 발명은 구성의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개의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들이 허리 스트랩과 인접하게 고정 연결된다"라는 부분의 의미에 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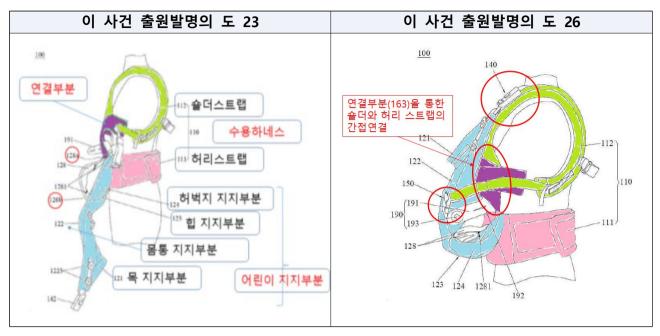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청구범위의 "2개의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들이 허리 스트랩과 인접하게 고정 연결된다"는 부분은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들)이 허리 스트랩과 직접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을 통하여 간접 연결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가 허리 스트랩과 인접하게 고정 연결된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접"의사전적 의미는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이므로,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가 허리 스트랩과 인접하게 고정 연결된다"는 것은 그 문언상, 숄더 스트랩이 허리 스트랩과 서로 맞닿은 상태에서 연결된 것 뿐 아니라 서로 맞닿지 않았더라도 인접한 상태에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청구범위는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으나, 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숄더 스트랩이 허리 스트랩과 직접 맞닿아 연결되는 구조(또는 구성)를 갖는다'고 한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 6에는 다음과 같이 숄더 스트랩이 허리 스트랩 (111)과 맞닿아 직접 연결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반면 도 22에는 숄더 스트랩이 연결부분(163)을 통하여 허리 스트랩(111)에 간접 연결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6 도 6,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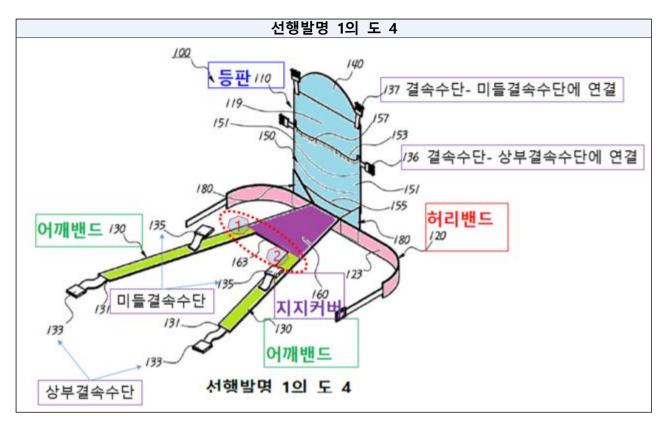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 22에서는 숄더 스트랩과 허리 스트랩이 연결되는 지점인 고정 단부가 연결부분으로 덮여 가려져 있어 숄더 스트랩이 허리 스트랩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갑 제4호증의 1의 영상에는, 숄더 스트랩이 허리스트랩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1의 영상은 피고가 실시하는 제품에 관한 것인데, 위 피고 실시 제품의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도 23, 도 36)에 의하면, 위 도 22에 나타난 숄더 스트랩은 (허리 스트랩이 아니라) 숄더 스트랩과 허리 스트랩 사이에 형성된 연결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 대응 구성의 대비

이상과 같은 해석에 기초하면,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다음 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가)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지지커버(160)의 종단부에 상기 어깨밴드(130)가 연결되어 구성되고", "허리밴드(120)와 등판(110)의 양측에 연결되어 양 어깨에 걸리는 어깨밴드(130)"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와 같은 도면이 도시되어 있다(을 제1호증 식별번호 <15〉, <28〉, 도 4 참조). 위 기재 등으로부터 선행발명 1에 개시된 2개의 어깨밴드는 일측 단부(다음 도면의 ⑩ ②)가 허리밴드와 맞닿아 연결된 지지커버의 종단부에 고정 연결됨으로써 결국 허리밴드에 간접적으로 고정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2개의 숄더 스트랩[어깨밴드]이 각각 허리 스트랩[허리밴드]과 인접하게 고정 연결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① 몸통 지지 부분[등판]에 탈착식으로 체결되는[상부결속수단(133)과 결속수단(136)이 체결되는] 원위 단부[어깨밴드의 종단부]를 가지고 있다는 점, ② 2개의 숄더 스트랩[어깨밴드]가 허리 스트랩으로부터 원위 단부들 쪽으로[허리밴드로부터 어깨밴드의 종단부 방향으로] 갈수록 서로 간격이 멀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몸통 지지 부분 [등판의 상단 양측의 결속수단(137)]이 원위 단부[어깨밴드의 종단부에 연결된 상부결 속수단]와 고정 단부[어깨밴드와 지지커버가 연결된 부분 또는 지지커버가 허리밴드에 연결된 부분] 사이의 위치에서 2개의 숄더 스트랩 각각[어깨밴드의 미들결속수단]에 탈 착식으로 체결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이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차이점의 용이 극복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1,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목받침대와 지퍼 구성을 부가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명세서에 기술된 목 지지 부분(121)은 어린이의 머리를 위한 적절한 지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의 크기에 따라 용이하게 조절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목 지지 부분(121)은 어린이를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 "목 지지 부분(121)은 파스너에 의해 몸통 지지 부분(122)의 상부에 탈착식으로 연결될수 있는데, 파스너의 한 예는 지퍼 파스너(126)일 수 있다. 파스너는 목 지지 부분(121)을 몸통지지 부분(122)에 연결하도록 결합될 수 있으며, 몸통 지지 부분(122)으로부터 목 지지 부분(121)을 제거하도록 분리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보육자는 필요 시에 목 지지 부분(121)을 용이하게 제거하고 장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목 지지 부분은 어린이의 머리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시 용이하게 장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파스너에 의해 몸통 지지 부분과 탈착식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갑 제1호증의 6 식별번호 <0023>, <0047> 참조).

나) 선행발명 2에는 '생후 3개월의 아기는 몸에 힘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목받침대를 사용하면 더욱 안정감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다음 도면과 같이 일측면에 지퍼가 형성되어 있어 캐리어 부분과 탈착이 가능한 목받침대가 개시되어 있다(을제2호증 9~10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 지지 부분은 어린이의 목을 지지하여 안정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2에 개시된 목 받침대와 그 목적과 기능이 동일하다. 또한 양 대응 구성은 목 지지 부분[목받침대]과 몸통 지지 부분[캐리어부분]이 파스너[지퍼]에 의해 탈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구조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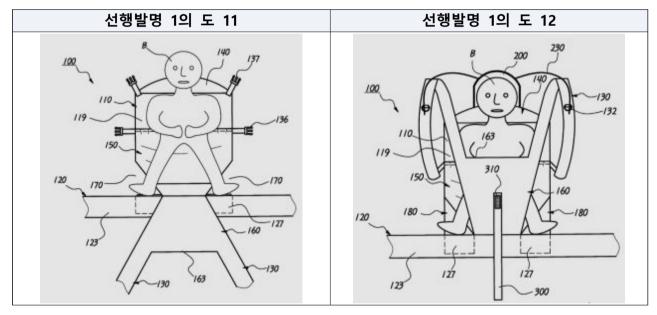
- 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목받침에 선행발명 2의 지퍼를 결합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1) 선행발명 1, 2는 모두 아기띠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선행발명 1의 목받침과 선행발명 2의 목 받침대 모두 아기의 머리를 받치도록 형성된 것으로(을 제1호증 식별번호 <15>, <24>, 을 제2호증 9~10면 참조), 그 기능과 목적이 동일하다.
- (2) 선행발명 1 명세서에는 '목받침을 접어서 등판의 내부에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을 제1호증 식별번호 <31>, <32>, <45>), 필요에 따라 목받침을 장착하거나 제거하려는 동기가 나타나 있다.
- (3) 선행발명 1의 목받침에 선행발명 2의 지퍼를 도입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작용효과의 현저성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목받침대와 지퍼 구성을 부가하여 쉽게 이를 수 있고,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에 탈착이 가능한 목받 침대를 부가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안함,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들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숄더 스트랩은 허리 스트랩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① 어린이 지지 부분은 허리 스트랩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위치하여 보육자와 어린이가 모두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고, ② 허리 스트랩이 보육자의 허리둘레 전체에 밀착되어 어린이의 안정적 지지가 가능하며, ③ 숄더 스트랩이 어린이의움직임에 따른 간섭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육자의 몸체에 밀착되고, ④ 숄더 스트랩이 어린이의무게에 의하여 허리 스트랩을 잡아 당기므로 허리 스트랩의 지지 무게를 분담하게 되어 보육자의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일 수 있어서 장시간 착용 시피로감이 적은 효과가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지지커버에 의해 아기의 엉덩이가 허리밴드(120)의 안쪽에 위치하고, 어깨 밴드가 지지커버에 연결되어 있을 뿐 허리밴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보육자의 허리에 밀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1)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숄더 스트랩이 허리 스트랩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숄더 스트랩이 허리 스 트랩과 직접 연결되는 구성 뿐만 아니라 간접 연결되는 구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효과라 고 볼 수 없다.
 - (2) 선행발명 1 명세서의 "상기 어깨밴드(130)가 등판(110)에 연결되기 위해서.

상기 허리밴드(120) 내측면(123, 신체가 접하는 면9)에 아기(B)의 사타구니를 커버하여 지지하는 지지커버(160)가 부착되고, 상기 지지커버(160)의 종단부(163)에 상기 어깨밴드(130)가 연결되어 구성된다.", "상기 허리밴드(120)의 상단에 형성된 등판(110)"이라는 기재(을 제1호증 식별번호 <28>, <30>) 및 도 11, 12의 도시에 의하면, 캐리어에 수용된 어린이의 복부, 사타구니는 지지커버(160)에 맞닿고 등, 엉덩이는 등판(110)에 맞닿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1의 지지커버에 어린이의 엉덩이가 위치한다거나 어린이가 허리밴드와 보육자의 몸통 사이에 놓이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선행발명 1의 경우에도 허리 스트랩을 조여 보호자에게 밀착하여 착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

⁹⁾ 보육자의 신체를 의미한다.

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 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 절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참조). 이 사건 심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보원

판사 한지윤